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2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

다. 상정일자 : 제120회 사하구의회 (제1차 정례회)

제 3차 총무위원회(2004. 7. 13)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윤여철 기획감사실장)

### 가. 제안이유

동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·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

○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

▷ 2004. 6. 30 ⇒ 2005. 6. 30(안 부칙 조례 제494호 제2조제1항)

## 3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

○ 읍면동 기증전환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

▷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- 1425(2004. 6. 29)호

▷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- 4345(2004. 6. 29)호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에 의거 2004. 6. 30에서 2005. 6. 30까지 연장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